

제 702 호
1982.11.23.

발행인: 서울특별시장 이 상 배
편집인: 공 보 관 이 상 진
전화: 791-8111~3
인쇄: 한록멀티산업(인쇄)주식회사
전화: 279-8111~3

시 보

차 례

● 규 칙

- 제 2510 호 서울특별시사무본청규칙등개정규칙 2
- 제 2511 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등개정규칙 2
- 제 2512 호 서울특별시농촌지도소칙제규칙등개정규칙 3

공	25																			
발																				

1. 시 공무원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민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"남길은 길로 남길은 세계로"

2423

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증개정규칙을 이
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이상배 ㉔
1992. 11. 23

㉔서울특별시규칙제 2510 호

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증개정규칙
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 중 다음과 같이
개정합니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, 제2조의2 및
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(공보관) 공보관을 보좌하게 하기 위
하여 공보1담당관 및 공보2담당관을 두
며, 각 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.

제2조의2(공보1담당관) ①공보1담당관 밑
에 공보행정계 및 홍보기획계를 두며, 공
보행정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, 홍보
기획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
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.

②공보1담당관의 제별 분장사무는 다음
각호와 같다.

1. 공보행정계
 - 가. 공보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
 - 나. 정기간행물 등록 및 관리
 - 다. 사회단체 등록 및 관리(공보분야)
 - 라. 시정여론조사 및 시정반영
 - 마. 시보발간
 - 바. 서울시민신문 발행
 - 사. 시정홍보위원 운영
 - 아. 시정소식유송망(DM) 운영
 - 자. 이동전시홍보에 관한 사항
 - 차. 국정홍보관 관리
 - 카. 관내 다른 담당관 및 다른 계의 주
관내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
2. 홍보기획계
 - 가. 시정에 관한 기획홍보 및 보도
 - 나. 광고물에 의한 시정 홍보
 - 다. 홍보물 제작 및 조정 통제
 - 라. 유선방송 허가 및 지도
 - 마. 홍보영화 제작에 관한 사항

제2조의3(공보2담당관) ①공보2담당관 밑
에 보도1계 및 보도2계를 두며, 각 계장
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②공보2담당관의 제별 분장사무는 다음
각호와 같다.

1. 보도1계
 - 가. 보도자료 조정 및 제공 관리총괄
 - 나. 보도 필요 사항 지정수합
 - 다. 인쇄매체 보도지원
 - 라. 보도내용 분석 반영
 - 마. 청내 정기간행물 구독 배포에 관한
사항
 - 바. 신문광고 등에 관한 사항
 - 사. 경사진실 운영
 - 아. 기사실 운영
 - 자. 관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
니하는 사항
2. 보도2계
 - 가. 전파매체 보도자료 제공 관리
 - 나. 전파매체 보도지원
 - 다. 방송모니터실 운영
 - 라. 전파매체 보도내용 분석 반영
 - 마. 동사진실 운영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증개정규칙
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이상배 ㉔
1992. 11. 23

㉔서울특별시규칙제 2511 호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
개정규칙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 중 다음과
같이 개정한다.

(별표 1) 본청지방공무원정원표 총계정
원란 "1,870"을 "1,876"으로 하고, 4급정원
란 "17"을 "18"로 하며 정원내용란 중 행
정직 "5"를 "7"로 하고 "행정 또는 4급

상당 별정직 1"을 삭제한다.
 5급정원란 "242"를 "243"으로 하고, 정원
 내용란 중 행정 또는 별정직(5급상당) "8"
 을 "9"로 한다.

6급정원란 "449"로 "450"으로 하고, 정원
 내용란 중 행정직 "304"를 "305"로 한다.

7급정원란 "547"을 "549"로 하고, 정원내
 용란 중 행정직 "389"를 "391"로 한다.

기능직 정원란 "472"를 "473"으로 하고
 정원내용란 중 10등급 "312"를 "313"으로
 하며, 사무보조원 "88"을 "89"로(타자 "66"
 을 "67"로)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농촌지도소직제증개정규칙을
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이상배 ㉔
 1992. 11. 23

●서울특별시규칙제 2512 호

서울특별시농촌지도소직제규칙중
 개정규칙

서울특별시농촌지도소직제 중 다음과 같
 이 개정한다.

제명 중 "농촌지도소직제"를 "농촌지도소
 직제규칙"으로 한다.

제1조 중 "지방농촌진흥기구설치에관한규
 정 제3조제4항의"를 "서울특별시와그소
 속기관직제 제30조의"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